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2가단289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22. 14.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등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우

별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발생 원인을 참작하여 채무 금액을 감면하여 주기를 바랄 뿐, 채무의 내용과 금액자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